

# 태국의 경쟁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2021. 9.





# CONTENTS



+++++

+++++

+++++

+++++

+++++

<b>I. 경쟁법 및 경쟁당국 개괄</b>	<b>1</b>
<b>II. 경쟁법 주요 내용</b>	<b>3</b>
1. 경쟁제한적 합의 금지	3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	8
3. 기업결합 규제	13
4. 불공정경쟁행위 금지	18
<b>III. 사건처리절차</b>	<b>22</b>
<b>IV. 기업들이 유의할 점</b>	<b>26</b>

## I 경쟁법 및 경쟁당국 개괄

■ **(경쟁법) 태국 거래경쟁법**(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แข่งขันทงการศก พ.ศ. 2560(Trade Competition Act), 이하 “경쟁법”)

- **(규율행위)** ① 경쟁제한적 합의, ②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③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④ 불공정경쟁행위
- **(적용 제외)** ① 중앙 및 지방정부, 지역의 자치단체, ② 국가의 안보, 공익, 이익의 유지에 도움이 되거나 공익사업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 또는 내각의 의결에 따르는 국영 기업, 공공기관 또는 정부의 기타 기관, ③ 농민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법에 의해 인정되는 농민,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단체, ④ 경쟁 관련 문제에 관할권을 가지는 다른 부문의 법률에 따라 특별히 규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경쟁법 제4조)
- **(외국 사업자와의 거래 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독점적 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초래하거나 경제·소비자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외국 사업자와의 법률 행위나 계약 체결은 금지됨(경쟁법 제58조)

■ **(경쟁당국) 태국 거래경쟁위원회**(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การแข่งขันทงการศก (Trade Competition Commission), 이하 TCC)

- **(주요 역할)** TCC는 경쟁법 사건을 처리하고, TCC 사무처(Office of Trade Competition Commission, 이하 OTCC)는 TCC의 행정업무 및 시장구조 등에 대한 조사를 담당함
- **(조직구성)** TCC는 위원장·부위원장과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고, OTCC는 사무처장과 6개 국으로 구성됨

## 〈 조직도 〉



## II 경쟁법 주요 내용

### 1 경쟁제한적 합의 금지

동일한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는 모든 사업자는 해당 시장의 독점화, 경쟁의 감소 또는 제한을 가져오는 행위를 공동으로 행하는 것이 금지됨(경쟁법 제54조)

사업자는 해당 시장의 독점화, 경쟁의 감소 또는 제한을 가져오는 행위를 공동으로 행하는 것이 금지됨(경쟁법 제55조)

#### 가. 금지되는 경쟁제한적 합의 유형

##### ■ 경성카르텔(경쟁법 제54조)

- ① 직·간접적으로 구매가격, 판매가격 또는 상품 및 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기타 거래조건을 고정하는 합의
  - 가격 자체를 조절하거나 가격 변동 범위를 설정하는 합의
  - 할인, 화물 비용을 포함한 비용, 부가 서비스, 지불 조건, 보증 조건 등을 부과하는 합의
- ② 각 사업자가 생산, 구매, 판매 또는 제공할 상품 또는 용역의 양을 제한하는 합의
  - 각 사업자에게 생산, 구매, 판매 또는 제공할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결정하는 합의
  - 각 사업자에게 생산, 구매, 판매 또는 제공할 상품 또는 용역의 비율을 결정하는 합의
  - 각 사업자에게 생산, 구매, 판매 또는 제공할 상품 또는 용역의 할당량을 결정하는 합의
- ③ 어느 한 당사자가 경매에서 낙찰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입찰에서 낙찰되거나, 다른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입찰에 참여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합의하거나 조건을 정하는 합의
  - 상품이나 용역의 조달을 위한 경매 혹은 가격 경쟁에서 (a) 특정 사업자가 경매에서 낙찰되도록 하거나 (b) 특정 사업자가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합의하거나 조건을 정하는 합의

- ④ 각 사업자가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줄이거나 구매하는 지역을 할당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업자가 해당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 또는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 하에서 각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또는 구매할 수 있는 특정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할당하는 합의

■ **연성카르텔**(경쟁법 제55조)

- ①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자가 아닌 사업자 사이에 제54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서 규정한 조건을 설정하는 합의
- ②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을 이전에 생산, 판매 또는 제공된 것보다 떨어뜨리는 합의
- ③ 동일한 상품을 독점 판매하거나 동일한 용역 또는 동일한 유형의 용역을 독점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자를 지정하거나 배정하는 합의
  - (a) 지정 또는 배정은 서면이나 다른 일정한 형태로 해야 하고, (b) 지정 또는 배정된 자는 자연인이거나 법인일 수 있으며, (c) 독점 판매하도록 지정된 자는 동일한 시장 내 경쟁자이어야 함
- ④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조건 또는 관행을 설정하여 이러한 관행이 합의된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 조건이나 관행은 서면이나 다른 특정 방식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해당 시장에서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 또는 생산과 관련된 조건이나 관행이어야 함
- ⑤ TCC의 고시에 규정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합작 계약을 체결하는 것

## 나. 예외적 허용

### ■ (허용 요건①) 경쟁법 제54조상 금지되는 합의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경제적 단일체로 간주되는 경우\*(공동의 기업경영권 하에 놓인 사업자들이나 공동의 지배지분을 가진 사업자들의 경우)

\* The Trade Competition Commission Notice on Guidelines for the Assessment of Collective Practices by Undertakings that are Monopolization, Competition Reduction, or Competition Restriction in Market B.E. 2561 (2018) 제9조

- TCC 고시에 규정된 정책 또는 명령으로 인해 서로 관련된 사업자 간의 합의(경쟁법 제54조)

### ■ (허용 요건②) 경쟁법 제55조상 금지되는 합의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경쟁법 제56조)

- TCC 고시에 규정된 정책 또는 명령으로 인해 서로 관련된 사업자 간의 합의

- 경제적 단일체로 간주되는 경우\*(공동의 기업경영권 하에 놓인 사업자들이나 공동의 지배지분을 가진 사업자들의 경우)

\* The Trade Competition Commission Notice on Guidelines for the Assessment of Collective Practices by Undertakings that are Monopolization, Competition Reduction, or Competition Restriction in Market B.E. 2561 (2018) 제11조

- 합작 계약이 생산, 유통 및 기술적 또는 경제적 발전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단, 목적을 이루기에 필요한 정도 이상의 제약조건을 부과하면 안 되며, 독점력이나 상당한 경쟁제한 효과를 형성하면 안 되며,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함

- **합작 계약이 서로 다른 사업자들 간 계약의 형태로, 한쪽은 상품이나 용역, 상표, 사업 운영방법 또는 사업지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다른 한쪽은 그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요금, 수수료 또는 기타 보수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경우**

\* 단,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정도 이상의 제약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되고, 독점력이나 상당한 경쟁제한 효과를 형성하여서는 아니되며,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고려해야 함

- **계약 유형 또는 사업 형식은 TCC의 권고(advice)에 대한 부령(ministerial regulation)으로 정함**

## 다. 위반 시 제재

### ■ (행정제재) 과징금, 시정명령

- **(과징금)** 경쟁법 제55조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위반행위가 있는 해의 연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경쟁법 제82조)
  - 사업 첫해에 경쟁법 제55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바트(한화 약 3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 **(시정명령)** TCC는 사업자가 경쟁법 제54조, 제55조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불만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행위의 중단, 중지 또는 시정이나 변경을 명령할 수 있음(경쟁법 제60조)
  - TCC가 명령을 내릴 때에는 심의한 위원의 서명과 함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모두 포함한 이유를 함께 표시해야 함(경쟁법 제61조)
  - TCC는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사업자는 TCC가 정한 기준, 방법, 조건 및 기준을 따라야 함
  - TCC는 명령을 내린 날로부터 7일 내에 통지하여야 함



- 사업자가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행정법원의 판결 또는 집행정지 명령, TCC의 철회 명령이 있지 않는 한 TCC의 명령을 따라야 함

■ **(형사처벌) 경쟁법 제54조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 부과**(경쟁법 제 72조)

\* 형사처벌은 법원에 의해서만 부과될 수 있는데, TCC는 법원에 기소하기 전에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음

● **(징역)**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

- 사업 첫해에 경쟁법 제54조를 위반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

● **(벌금)** 위반행위가 있는 해의 관련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벌금을 부과

- 사업 첫해에 경쟁법 제54조를 위반한 경우 100만 바트(한화 약 3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벌금 부과

● **(신고)** 범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TCC에 범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고, 다만 법원에 직접 형사처벌을 요청할 수는 없음(경쟁법 제78조)

■ **(손해배상청구) 경쟁법 제54조 또는 제55조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경쟁법 제69조)

● **(시효)**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년 내에 이루어져야 함 (경쟁법 제70조)

● 소비자보호위원회 또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소비자 또는 협회 및 재단의 회원을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

사업자가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경쟁법 제50조)

### 가. 시장지배적 지위

#### ■ 시장지배적 지위의 판단(경쟁법 제5조)

-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란 TCC 고시에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시장점유율 및 매출액을 가진 사업자를 의미함(The Trade Competition Commission Notice on Criteria for being an Undertaking with Dominant Position B,E. 2561 (2018))

\* 경우에 따라 경쟁조건과 관련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소를 고려해야 함(TCC는 고시 시행일로부터 매 3년마다 시장점유율 및 매출액 기준을 재검토해야 함)

#### TCC의 시장지배력 지위 판단

- ① 직전 회계연도 기준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고 매출액이 10억 바트(한화 약 357억 원) 이상인 경우 또는
- ② 직전 회계연도 기준 매출액이 10억 바트(한화 약 357억 원) 이상이고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경쟁조건과 관련된 요소’란, 시장 내 사업자 수, 투자금액, 주요 생산요소에 대한 접근성, 유통채널, 사업운영네트워크,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 인프라, 정부 규제, 그리고 TCC 고시에 따른 기타 요소 등을 말함

## 나. 금지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유형(경쟁법 제50조)

- ①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 또는 판매가격을 부당하게 고정 또는 유지하는 행위(The Trade Competition Commission Notice on Guidelines for the Assessment of Practices by an Undertaking with Dominant Position B.E. 2561 (2018) 제5조)

- (a) 약탈적 가격설정(predatory pricing): 경쟁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목적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통상  $AVC$ (평균가변비용)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하는 경우 약탈적 가격설정으로 간주함
  -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다른 상품의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특정 상품의 가격을 인하하거나, 신제품의 시장진출을 위해 가격을 인하하거나, 급작스러운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한다는 등 정당화 사유를 제시해야 함
- (b) 비용 이하 가격설정:  $AVC < P < ATC$ (평균총비용)인 경우, 가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해당 가격 설정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함
- (c) 가격차별: 동일한 상품이나 용역을 서로 다른 거래 상대방에게 상이한 가격으로 제시하는 행위(비용, 수량, 품질 등과는 무관한 사유로 상이한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를 의미) 또는 비용, 수량, 품질 측면에서 상이한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거래 상대방에게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같게 설정하는 행위
- (d) 이윤압착: 하방 또는 상방 시장의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자이자 판매자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하방 또는 상방 시장의 고객이자 경쟁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여 영업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 적은 이윤만을 얻게 하는 행위
- (e) 과잉 가격설정: 국내외 다른 사업자의 가격 결정원리나 수익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자가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결정하거나 유지하여 과도한 이익을 얻는 행위

② 자신의 거래상대방인 다른 사업자에게 불공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상품의 생산, 구매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신용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The Trade Competition Commission Notice on Guidelines for the Assessment of Practices by an Undertaking with Dominant Position B.E. 2561 (2018) 제6조)

- (a) 할인제도(discount scheme): 충성할인과 같이, 구매자가 다른 공급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기 어려울 만큼 대량으로 구매해야만 가격을 할인해주는 방식
- (b) 배타조건부 거래행위(exclusive dealing): 거래상대방이 다른 사업자와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c) 수량 강제(quantity forcing): 거래상대방이 특정 수량만큼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d) 끼워팔기(tie-in sale):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부터 특정 상품을 구매하려면 다른 상품을 함께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
- (e) 재판매가격유지행위(resale price maintenance):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특정 가격이나 가격대에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행위
- (f) 거래상대방에게 공급 거절(refusal to supply to its trading party)

③ 시장의 수요에 비해 공급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판매, 구매, 인도를 줄이거나 국내 수입을 제한하거나 상품을 파손시키는 행위

④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기준들을 함께 고려함**(The Trade Competition Commission Notice on Guidelines for the Assessment of Practices by an Undertaking with Dominant Position B.E. 2561 (2018) 제9조)

- ① 일반적인 거래 규범에 합치하는지 여부
- ② 조건을 부과할 때 통상적인 거래와 같이 서면으로 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전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
- ③ 해당 행위가 경영·홍보·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
- ④ 그밖에 관련 있는 요소들

## 다. 위반 시 제재

### ■ **(행정제재) 시정명령**

- **(시정명령)** TCC는 사업자가 경쟁법 제50조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불만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행위의 중단, 중지 또는 시정이나 변경을 명령할 수 있음(경쟁법 제60조)
  - TCC가 명령을 내릴 때에는 심의한 위원의 서명과 함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모두 포함한 이유를 함께 표시해야 함(경쟁법 제61조)
  - TCC는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사업자는 TCC가 정한 기준, 방법, 조건 및 기준을 따라야 함
  - TCC는 명령을 내린 날로부터 7일 내에 통지하여야 함
  - 사업자가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행정법원의 판결 또는 집행정지 명령, TCC의 철회 명령이 있지 않는 한 TCC의 명령을 따라야 함

■ **(형사처벌) 경쟁법 제50조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 부과**(경쟁법 제 72조)

\* 형사처벌은 법원에 의해서만 부과될 수 있는데, TCC는 법원에 기소하기 전에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음

● **(징역)**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

– 사업 첫해에 경쟁법 제54조를 위반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

● **(벌금)** 위반행위가 있는 해의 관련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벌금을 부과

– 사업 첫해에 경쟁법 제54조를 위반한 경우 100만 바트(한화 약 3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벌금 부과

● **(신고)** 범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TCC에 범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고, 다만 법원에 직접 형사처벌을 요청할 수는 없음(경쟁법 제78조)

■ **(손해배상청구) 경쟁법 제50조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경쟁법 제69조)

● **(시효)**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년 내에 이루어져야 함(경쟁법 제70조)

● 소비자보호위원회 또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소비자 또는 협회 및 재단의 회원을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사례  
①

**M-150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2019)**

- M-150 Company Limited라는 에너지 음료 제조회사는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유통 업체로 하여금 경쟁사의 에너지 음료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함
- TCC는 M-150의 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라고 판단하여 형사기소를 함
- 회사와 대표자에게 각 600만 바트(한화 약 2억 1,100만원)의 벌금이 부과

### 3 기업결합 규제

특정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 결합일로부터 7일 내에 TCC에 신고해야 하고, 독점을 유발하거나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할 수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TCC의 허가를 받아야 함(경쟁법 제51조)

#### 가. 기업결합 규제 개요

##### ■ (기업결합 유형) 기업결합은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됨(경쟁법 제51조)

- ① 생산자, 판매자, 생산자와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 간의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하나의 회사가 존속하고 다른 회사는 해산하거나 신설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 ② TCC 고시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정책, 경영방향 등을 통제하기 위해 다른 회사의 자산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행위
  - (세부기준) 다른 기업의 직전 회계연도 자산 총액의 50% 이상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 (The Trade Competition Commission Notice on Criteria for the Assessment of Acquisition of Assets or Shares to Control Business Policy, Administration, Direction, or Management deemed as Merger B.E. 2561 (2018))
- ③ TCC 고시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정책, 경영방향 등을 통제하기 위해 다른 회사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행위
  - (세부기준) 증권거래법상 규율 대상 기업이 다른 사업자의 주식, 신주인수권, 기타 전환사채를 직·간접적으로 매입하거나 취득하여 그 사업자의 의결권주의 25%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어느 기업이 다른 사업자의 의결권주를 직·간접적으로 매입하거나 취득하여 그 사업자의 의결권주의 50%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The Trade Competition Commission Notice on Criteria for the Assessment of Acquisition of Assets or Shares to Control Business Policy, Administration, Direction, or Management deemed as Merger B.E. 2561 (2018))

## 나. 기업결합 신고

■ **(제한되는 기업결합)**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TCC에 신고하여야 하고, 특정 시장에서 독점을 유발하거나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할 수 있는 기업결합은 TCC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①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매출액이 10억 바트(한화 약 357억 원) 이상이거나 ② 결합 후 회사의 매출액이 10억 바트(한화 약 357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함

- 상품·용역의 가격 또는 양을 독립적으로 정할 수 있는 상당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매출액이 10억 바트(한화 약 357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독점을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 ① 직전 회계연도 기준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억 바트(한화 약 357억 원) 이상인 경우, 또는

② 직전 회계연도 기준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서 각 매출액이 10억 바트(한화 약 357억 원) 이상인 경우(단, 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이상이어야 함)에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하는 경우에 해당함

● **(기타 판단요인)** TCC는 이밖에 경영상 필요성, 기업결합에 따른 당사자의 이익,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함



#### 다. 기업결합 심사(The Trade Competition Commission Notice on Rules, Procedures, and Conditions for Merger Approval B.E. 2561 (2018))

##### ■ (신고대상 기업결합)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 당사회사는 기업결합일로부터 7일 이내에 TCC에 신고해야 함

- 이때 기업결합 전후의 각 주주 명부, 재무제표 등 TCC 고시(The Trade Competition Commission Notice on Rules, Procedures, and Conditions for Notification of Merger Transaction B.E. 2561 (2018))에서 정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 ■ (허가대상 기업결합) 독점을 유발하거나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할 수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 당사회사는 사전에 TCC로부터 기업결합 허가를 받아야 함

- 기업결합 당사회사는 TCC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TCC 사무처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TCC 위원장에게 이를 제출함
  - TCC는 당사회사에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TCC는 기업결합 허가신청에 대한 검토에 참고하기 위해 참고인을 불러 추가적인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음
- TCC는 기업결합 허가신청일로부터 90일 내에 심사하여야 하고, 필요시 심사기간을 최대 15일 연장할 수 있음

##### ■ (기업결합 허가 심사결과) TCC가 기업결합의 승인, 조건부 승인, 또는 불승인을 결정하면, TCC는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회사에 통지하여야 함

- TCC가 결정을 내릴 때에는 심의한 위원의 서명과 함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모두 포함한 이유를 함께 표시해야 함(경쟁법 제61조)

-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할 때 TCC는 해당 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해 준수기한을 정하여 추가적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당사회사는 TCC가 부과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만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TCC는 기업결합 승인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기업결합 허가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심사결정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the Administrative Court)에 항고할 수 있음

## 라. 위반 시 제재

### ■ (행정제재) 과징금, 시정명령

- (과징금)(경쟁법 제80조, 제81조)
  - 신고대상 기업결합(경쟁법 제51조 제1문)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만 바트(한화 약 7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및 위반일수당 1만 바트(한화 약 35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허가대상 기업결합(경쟁법 제51조 제2문)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기업결합 가액의 0.5% 이하의 과징금 부과
- (시정명령) TCC는 사업자가 경쟁법 제51조 제2문(기업결합 허가)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불만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행위의 중단, 중지 또는 시정이나 변경을 명령할 수 있음(경쟁법 제60조)
  - TCC가 명령을 내릴 때에는 심의한 위원의 승인과 함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모두 포함한 이유를 함께 표시해야 함(경쟁법 제61조)
  - TCC는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사업자는 TCC가 정한 기준, 방법, 조건 및 기준을 따라야 함

- TCC는 명령을 내린 날로부터 7일 내에 통지하여야 함
- 사업자가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행정법원의 판결 또는 집행정지 명령, TCC의 철회 명령이 있지 않는 한 TCC의 명령을 따라야 함

■ **(손해배상청구) 경쟁법 제51조 제2문(기업결합 허가)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경쟁법 제69조)**

- **(시효)**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년 내에 이루어져야 함 (경쟁법 제70조)
- 소비자보호위원회 또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소비자 또는 협회 및 재단의 회원을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Charoen Pokphand Group의 Tesco 인수합병 (2020)**

- 태국 재계1위 Charoen Pokphand Group(이하 CP)이 태국과 말레이시아 지역 사업을 총괄하는 Tesco의 아시아 사업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TCC는 해당 기업결합 이후 CP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아 사전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함
- TCC는 해당 기업결합에 대해 향후 3년간 동종의 사업을 인수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부과하여 조건부승인 결정을 내림

## 4 불공정경쟁행위 금지(경쟁법 제57조)

### 가. 불공정경쟁행위 금지유형

#### ■ (유형) 경쟁법에서 3가지 유형의 불공정경쟁행위를 규정함

- ①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a) 부당하게 낮은 판매가격을 설정하거나 (b) 부당하게 높은 구매가격을 설정하거나 (c)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자단체나 협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 ② 우월한 시장력(superior market power) 또는 거래상 지위(superior bargaining power)를 남용하는 행위

#### 우월한 시장력(market power)

어느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이상인 경우 우월한 시장력을 지닌 것으로 보며, 그 외에도 시장 참여자의 수, 투자비용, 생산요소에 대한 접근, 유통채널, 사업운영네트워크 또는 사업에 필요한 인프라, 법 및 규제 등과 같은 다른 관련요소들도 함께 고려됨

#### 우월한 거래상 지위(superior bargaining power)

- ① 어느 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규모가 자신의 매출액의 30% 이상인 경우
- ② 어느 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규모가 자신의 매출액의 30% 미만이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다른 사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선택지(대체거래선)가 없는 경우
  - (2) 제3자의 사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이 기존 거래상대방(특정 사업자)으로부터 받는 경우의 이익보다 큰 경우

- ③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The Trade Competition Notice on Guidelines for the Assessment of Harmful Practices B.E. 2561 (2018))

####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조건의 예시

- (a)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서로 다른 고객이나 서로 다른 지리적 영역에 대한 차별적 조건
- (b)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차별적 조건
- (c) 경쟁자의 거래상대방이 경쟁자에서 문제되는 사업자로 거래대상자를 전환하게끔 하는 차별적 조건
- (d) 거래상대방이 문제되는 사업자부터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로부터 다른 상품이나 용역을 강제적으로 구매하게끔 하는 조건
- (e)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행위를 막는 조건
- (f) 거래상대방과 다른 사업자 간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건
- (g) 거래상대방의 인력 채용을 제한하는 조건
- (h) 경쟁사업자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조건
- (i) 경쟁사업자의 내부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조건
- (j)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거절 조건

- ④ TCC 고시에 규정된 기타의 방식에 의한 행위

#### ■ (불공정성 판단기준) 불공정거래행위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기준들을 함께 고려함

(The Trade Competition Commission Notice on Guidelines for the Assessment of Harmful Practices B.E. 2561 (2018))

- ① 일반적인 거래 규범에 합치하는지 여부
- ② 조건을 부과할 때 통상적인 거래와 같이 서면으로 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전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
- ③ 해당 행위가 경영·홍보·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
- ④ 그밖에 관련 있는 요소들

## 나. 위반 시 제재

### ■ (행정제재) 과징금, 시정명령

- **(과징금)** 경쟁법 제57조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위반행위가 있는 해의 연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경쟁법 제82조)
    - 사업 첫해에 경쟁법 제5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바트(한화 약 3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 **(시정명령)** TCC는 사업자가 경쟁법 제57조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불만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행위의 중단, 중지 또는 시정이나 변경을 명령할 수 있음(경쟁법 제60조)
    - TCC가 명령을 내릴 때에는 심의한 위원들의 서명과 함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모두 포함한 이유를 함께 표시해야 함(경쟁법 제61조)
    - TCC는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사업자는 TCC가 정한 기준, 방법, 조건 및 기준을 따라야 함
    - TCC는 명령을 내린 날로부터 7일 내에 통지하여야 함
    - 사업자가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행정법원의 판결 또는 집행정지 명령, TCC의 철회 명령이 있지 않는 한 TCC의 명령을 따라야 함

■ **(손해배상청구) 경쟁법 제57조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경쟁법 제69조)

- **(시효)**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년 내에 이루어져야 함 (경쟁법 제70조)
- 소비자보호위원회 또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소비자 또는 협회 및 재단의 회원을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사례 ③

**Nissan의 불공정거래행위 > (2020)**

- Nissan Motor Thailand(이하 Nissan)의 대리점 7곳에서는 Nissan의 계약 갱신 거절을 사유로 TCC에 해당 행위를 신고함
  - Nissan은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동일한 평가를 받은 다른 대리점들과는 계약을 갱신하면서 특정 7곳과는 갱신하지 않음
  - 다만 Nissan은 계약 갱신 거절 사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함
- TCC는 Nissan이 대리점 7곳과 계약갱신을 거절한 행위를 취소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림 (경쟁법 제60조)
  - TCC는 Nissan이 해당 행위를 하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함

사례 ④

**농산물 도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 (2019)**

- 일부 농산물 도매업자는 농부들에게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 다른 경쟁자들로 하여금 도매업자가 설정한 가격 이외에 다른 가격에 농부들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함
- TCC는 이러한 도매업자들의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단하여 2만 5천 바트(한화 약 88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 당초 5만 바트(한화 약 176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위반행위를 한 도매업자들이 TCC의 조사에 협조하여 과징금을 감경함

### III

## 사건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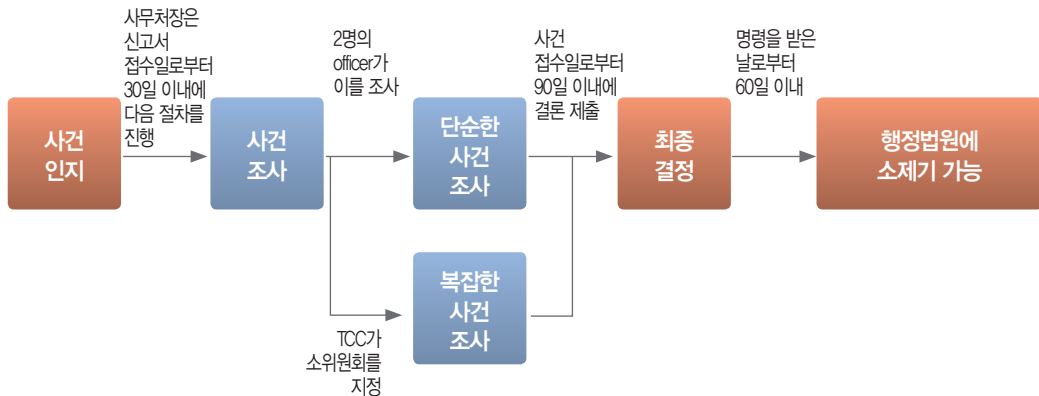
(The Trade Competition Commission Regulation on Complaints, Investigation and Procedures for Criminal or Administrative Prosecution B.E. 2562 (2019))

- **(사전검토 신청) 경쟁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사업자가 사전에 TCC에 검토·판단을 신청할 수 있음**(경쟁법 제59조, The Trade Competition Commission Notice on Rules and Procedures on a Request for Prior Approval B.E. 2561(2018))
  - **(대상 행위)** 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경쟁법 제50조), ② 경쟁제한적 합의(경쟁법 제54조, 제55조), ③ 기업결합(경쟁법 제57조, 제58조)
  - **(효력)** TCC의 결정(decision)은 TCC가 정한 범위와 기간 내에서 신청자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지님
    - TCC는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자에게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가 실질적으로 정확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거나, 신청자가 TCC가 규정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TCC는 결정을 철회하고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함
  - **(접수 및 거절)** TCC는 사전검토 신청서를 제출받아 접수번호를 부여함
    - TCC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검토 신청을 거절할 수 있음
      - ① 검토신청 대상 행위가 이미 TCC에 신고된 경우
      - ② 검토신청 대상행위가 TCC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③ 검토신청자에 의해 이미 해당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 TCC는 검토신청을 거절하는 경우에 신청자에게 거절 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함



- **(승인 절차)** TCC 사무처장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TCC 위원장에게 이를 제출함
  - TCC는 신청자에게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TCC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및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만을 참고하여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함
- **(기한)** TCC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TCC는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함
  - TCC가 위 기한 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한 연장의 이유, 필요성 및 연장 기한을 들어 기한 만료 15일 전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도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통지하여야 함

### 사건처리절차 개요도



- **(사건인지)** 경쟁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나 TCC에 신고를 할 수 있고, TCC가 경쟁법 위반이 명백한 행위에 대해 TCC가 조사하도록 할 수 있음
  - 이때 신고는 서면, 구술, 온라인을 통해 가능함

- 신고자가 신고 철회 등 신고 절차를 중단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TCC의 별도 결정이 없는 한 절차는 계속 유지됨

■ **(사건조사) 신고서가 TCC에 접수된 경우, 추가적인 자료제출요청이 필요한지 검토한 다음 사무처장에게 보고함**

- 사무처장이 신고서를 보고받은 경우,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절차를 진행해야 함
  - 신고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은 TCC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신고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신고 내용이 TCC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사무처장은 보고서를 작성한 후 TCC에 제출해야 함
  -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TCC는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신고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TCC는 다음 절차에 따름
  - 대상행위가 형사법을 위반하거나 형사법 및 행정법을 동시에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사법 절차를 따름
  - 대상행위가 행정법 위반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법 절차를 따르되,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단순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2명의 담당관을 지정하고,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는 TCC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함
  - 어떠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에 대해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단순한 사건)** 단순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2인의 담당관(officer)을 지정하여 조사를 하게 함
  - 담당관은 조사 이후에 검토보고서(fact-finding report)를 작성하여 사건 처리에 대한 권고와 함께 지체 없이 사무처장에게 보고해야 함

- 사무처장은 검토보고서를 보고받고 제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재 및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을 피심인(disputing party)에게 통지하고, 피심인에게는 반박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사무처장은 검토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TCC에 심사안을 제출하여야 함

- 사무처장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담당관에게 추가 증거를 확보할 것을 지시할 수 있음

● **(복잡한 사건)** 복잡한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TCC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소위원회는 행정법, 경제, 법학, 경영, 회계 등 해당 업무와 관련 있는 영역에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3~5인으로 구성함(이때 최소 1인은 법학이나 경제학에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 하며 1인은 소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해야 함)

- 소위원회 구성 이후 최초 모임에서 소위원장을 선출하고,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피심인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함

- 소위원회 구성에 이의가 있는 피심인이나 신고인은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이때 TCC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함

■ **(최종 결정)** 사무처장이나 소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90일 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 TCC에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때 연장 기간은 최대 30일임

● 사무처장이나 소위원회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과 과징금 부과 규모에 대한 의견을 TCC에 전달하여야 함

- 사무처장이나 소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하면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TCC에 보고함

## IV 기업들이 유의할 점

### 1 법 위반 예방 노력이 최선

#### ■ 사전 내부교육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할 필요

- 태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앞으로 경쟁법 집행 활동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신 경쟁법의 주요 내용을 숙지할 필요
- 경쟁법 위반 시 과징금, 시정명령 뿐 아니라 형사처벌,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등 광범위한 제재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유의

#### ■ 경쟁법 위반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당사자는 TCC에게 경쟁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판단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 2 경쟁당국의 조사에 대한 협조

#### ■ 담당관(officer)의 소환에 대해 불응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금고형 또는 5000 바트(한화 약 18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경쟁법 제73조)

#### ■ 담당관의 조사활동을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 바트(한화 약 7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경쟁법 제74조, 제75조)

### 3 경쟁당국의 법집행 동향을 적극적으로 파악

- 2019년 이후 TCC의 고시가 추가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에 대한 경쟁당국의 대응에 유의할 필요
  - TCC가 최근에 플랫폼에 기반한 음식 배달 서비스 사업자와 플랫폼 입점업체 간 불공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했음에 주목할 필요
- 2017년~2019년 사이의 법집행 사례를 보면, 불공정경쟁행위를 제일 활발하게 제재했음 (총 12건의 처리건수 중 9건이 불공정경쟁행위와 관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

◆ 본 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에서 발간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해외경쟁정책동향 홈페이지에서도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044-200-4326
- 공정거래위원회 해외경쟁정책동향: <http://www.ftc.go.kr/icps>

◆ 더불어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추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외교부 태국 국가정보: [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32](http://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32)
- 주태국대사관: [overseas.mofa.go.kr/th-ko/index.do](http://overseas.mofa.go.kr/th-ko/index.do)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moleg.go.kr](http://world.moleg.go.kr)
-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 방콕 무역관: [www.kotra.or.kr/KBC/bangkok](http://www.kotra.or.kr/KBC/bangkok)
- 태국 거래경쟁위원회: (홈페이지) [otcc.or.th/otcc-knowledge/#\(대표번호\)](http://otcc.or.th/otcc-knowledge/#(대표번호)) (+66) 02-199-5400





공정거래위원회